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아카데미 운영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사회교육개발원), 02-970-9191

제정 2017. 6. 20. 개정 2020. 9.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철도아카데미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아카데미(이하 "철도아카데미"라 한다)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2장 조직

- 제3조(원장) ① 철도아카데미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장이 겸임한다.
 - ② 원장은 철도아카데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철도아카데미를 대표한다.
- 제4조(조직) 철도아카데미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실과 철도운전면허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철도교육운영실을 둘 수 있다.
- 제5조(교수자격 및 임명) ① 철도아카데미 교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2 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철도아카데미 교수에는 책임교수 1명, 선임교수 1명 이상, 교수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 제6조(운영위원회) ① 철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아카데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철도아카데미 교수 및 사회교육개발원 과장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철도아카데미 운영계획(예산 및 결산 포함)
- 4.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
- 5. 그 밖에 철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책임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교육과정

제8조(교육과정) 철도아카데미에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과정을 둔다.

제9조(운영지침 등) 철도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 제10조(재정·회계) ① 철도아카데미의 재정은 수강료 등 교육생의 납부금, 그 밖의 사업비 및 대학회계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철도아카데미의 회계는 대학회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상벌

- 제11조(포상) 원장은 성적우수 교육생 및 교육생자치회 공로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징계)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육생에 대하여 제적 등 징계할 수 있다.
- 1. 철도아카데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교육생
- 2. 철도아카데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육생의 본분에 위배된 행동을 한 교육생
- 3. 수업과 그 밖의 철도아카데미 질서를 문란하게 한 교육생

부칙 (제377호 2017. 6.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2호, 2020.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